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757
----------	------

제출년월일 : 2015.11.18.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2010. 4. 2. 동 조례 제정 후 2014. 1. 14. 「도로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14. 12. 29.)되었으나,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조례명, 법 조항 등이 상위법령 등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7대 분야 개선과제 및 법제처 안산시 조례 정비과제 빌글에 따른 개선사항을 수용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항목 개정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혁 내용 반영
- 법제처 안산시 조례정비과제 개선방안 수용

□ 개정 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붙임4

- 예고기간 : 2015. 6. 24. ~ 7. 14.(20일)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5
- 방침결정문 : 붙임6

< 불임 1 >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 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 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 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임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연결로”란 임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7.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 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8.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연석(緣石)” 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청인 안산시 관할구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도로 등 4차선 이상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할 도로는 시장이 지정고시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인 도로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뚜렷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서 설치할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 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규칙 별표 2의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축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2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울타리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4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절차, 연결공사의 세부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허가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허가를 신청하여 진행 중인 신청 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적용할 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적용할 도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한 노선에 따른다.

임 안 자	소관 실·과	건설과
	실·과장 직위·성명 담당·팀장 직위·성명 담당자 성명·전화	건설과장 신현석 도로시설1계장 이경섭 정권진 (행정 243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조례명 안산시 도로와 다른 <u>도로</u>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조례명 안산시 도로와 다른 <u>시설</u>의 연결에 관한 조례</p> <p>제1조(정의)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변속차로” <u>란</u>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테이퍼” <u>란</u>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부대시설” <u>란</u>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부가차로” <u>란</u>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교차로” <u>란</u>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u>도로</u>(법정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교차로 영향권” <u>란</u>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로 인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p>제2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변속차로” <u>란</u>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테이퍼” <u>란</u>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부대시설” <u>란</u>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부가차로” <u>란</u>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교차로” <u>란</u>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u>도로</u>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연결로” <u>란</u>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p><u>7. “연결로” 라 함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u></p>	<p><u>7. “측도(側道)” 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u></p>
<p><u>8. “도시지역” 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u></p>	<p><u>8. “교통섬” 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u></p>
<p><u><신설></u></p>	<p><u>9. “길어깨” 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u></p>
<p><u><신설></u></p>	<p><u>10. “연석(緣石)” 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u></p>
<p>제3조(적용범위)</p>	<p>제3조(적용범위)</p>
<p>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 안의 상급도로, 법 제13조에 따른 시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도로 등 4차선이상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따른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p>	<p>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청인 안산시 관할구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도로 등 4차선이상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u>도로등</u> 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1호서식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u>시설을</u>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 <u>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u> 」(이하 “ <u>규칙</u> ”이라 한다) <u>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u>도로등의</u>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u>도로와 다른 시설의</u>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u> (이하 “ <u>변속차로등</u> ”이라 한다) 및 <u>부대시설</u> 등의 <u>설계도면</u>	2. <u>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u> (이하 “ <u>변속차로등</u> ”이라 한다) 및 <u>부대시설</u> 등의 <u>설계도면</u> (<u>접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u> <u>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u>
3. <u>도로점용허가신청서</u>	3. <u>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u> (<u>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u>변속차로등의</u> <u>설계도면의</u> 작성은 <u>별표 1 및 별표 2</u> 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u>변속차로</u> 등의 <u>설계도면의</u> 작성은 <u>규칙 별표 1 및 별표 2</u> 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로에 다른 <u>도로등을</u>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도로에 다른 <u>시설을</u>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u>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u> 또는 <u>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u>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u> <u>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u> 또는 <u>규칙 별지3호서식의</u> <u>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p>제5조(도시지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p> <p>① 시장은 도시지역 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p>	<p>제5조(도시지역에서의 연결허가 기준)</p> <p>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p>② 시장은 도시지역 안이라도 교통사고 유발위험, 교통정체구역 등으로 교통사고 및 교통흐름 저해 등이 예상되는 시설물 등의 연결허가에 대하여는 도로교통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허가의 적합성여부를 판단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사(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곡선반경이 <u>280미터</u>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u>별표 3</u>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u>시거</u>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p>	<p>1. 곡선반경이 <u>280미터(2차로인 도로는 140미터)</u>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u>규칙 별표 3</u>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u>시거(視距)</u>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p>
<p>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u>5퍼센트</u>, 산지에서 <u>8퍼센트</u>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u>오르막차로</u>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u>오르막 차로</u>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p>	<p>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u>6퍼센트</u>, 산지에서 <u>9퍼센트</u>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u>오르막차로</u>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u>오르막 차로</u>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p>
<p>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5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별표 6의 판매시설, 일반음식점으로 주차대수 5대 이하의 경우와 별표 6의 업무시설·근린시설로서 주차대수 10대 이하인 경우 및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최소간격 이내의 구간에도 교통량, 인접 교차로의 서비스 교통률, 신호시간, 도로의 기능에 따라 연결할 수 있다.</p> <p>가. 「도로법」상의 도로 중 4차로 이상이 되는 도로</p> <p>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도로 중 4차로 이상이 되는 도로</p>	<p>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p> <p>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p>

<p><u>다. 4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12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u></p>	<p><u>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u></p>
<p><u>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u></p>	<p><u>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뚜렷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u></p>
<p><u>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u></p>	<p><u>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u></p>
<p><u>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u></p>	<p><u>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u></p>
<p><u>5. ~ 6. (생략)</u></p>	<p><u>5. ~ 6. (현행과 같음)</u></p>
<p>제8조(변속차로)</p>	<p>제8조(변속차로)</p>
<p>1. 길이는 <u>별표 6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u></p>	<p>1. 길이는 <u>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u></p>
<p>2. ~ 3. (생략)</p>	<p>2. ~ 3. (현행과 같음)</p>
<p><u>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u></p>	<p><u>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 반경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u></p>
<p>5. (생략)</p>	<p>5. (현행과 같음)</p>
<p><u>6. 변속차로에서 사업 부지로 진출입시 진입로는 사업부지 초입에 연결하고, 진출로는 사업부지 끝에 연결하여 사업부지로의 진입로와 진출로를 달리 설치할 것</u></p>	<p><삭제></p>

제9조(부가차로)	제9조(부가차로)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u>15미터</u>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u>12미터</u>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
제11조(분리대)	제11조(분리대)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분리대는 화단, <u>가드레일</u>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u>방호울타리</u> , 교통섬(규칙 별 표 2의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 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 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u>0.3미터</u>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u>0.3미터(교통섬 0.12미터)</u> 이 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3조(부대시설)	제13조(부대시설)
1. <u>가드레일</u>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 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 되도록 설치할 것	1. <u>방호울타리</u>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 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 되도록 설치할 것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제15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도로 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사무를 구청장에게 위 임할 수 있다.
<신설>	제16조(준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 절차, 연결공사의 세부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의 예에 따른다.
별표 1 ~ 별표 6(생략)	<삭제>
별지 제1서식 ~ 별지 제3서식(생략)	<삭제>